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692

제안일자 : 2019. 06. 20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안전'이라는 범위와, 지원 대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며, 일부 지원 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개념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조제1호),

○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함(안 제2조제2호).

○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며(안 제3조제3항 신설),

○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주거안전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주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중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한 사항은 특정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 이동'을 지원하도록 수정하며(안 제6조제1항제5호),

○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임대료 동결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의 각목외의 ‘거처’를 ‘주택이외의 거처’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의 본문외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다목에서 바목까지는 삭제한다. ‘사’목부터 ‘카’까지는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주거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스스로 갖추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한다.

안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매년’을 ‘5년마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5호 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주거 이동 지원’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임대료를 동결하여야 한다.’를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 중 ‘카목’을 ‘바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주거안전 취약계층**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처**를 말한다.	1. ---------- **주택이 외의 거처** ------.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가. (삭제)**
나. (생략)	**가.** (제정안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타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 바. (삭제)**
사. ~ **카.** (생략)	**나.** ~ **바.** (제정안과 같음)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주거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스스로 갖추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사람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 ---------- ---------- ---------- **2년마다** ----------. (제정안과 같음)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 ----------

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5년마다** ----------. (제정안과 같음)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생략) 1. ~ 4. (생략)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 7. (생략)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5. ---------- **주거이동 지원** 6. ~ 7. (제정안과 같음) ② ---------- ---------- ---------- -------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 ----------**바목** ---------- ---------- ----------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불하고 숙박하는 거처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